

# 채권 양도(환매) 예정 통지

씨에스씨25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("양도예정인")는 2025.12.29. 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아래 제이티저축은행 주식회사("양수예정인")으로부터 받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26.08.10. 자로 아래 양수예정인에게 재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\* 채권매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위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양도예정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7항에 의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예정인에게 이전·제공 할 예정이며, 양수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위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,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예정인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 및 방법은 본 통지서 [별지]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.

| 양도예정인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매입사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이사 |
| 씨에스씨25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|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60, 502호 (도봉동, 한발법조타워) | 윤원민    |

| 양수예정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매각사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  |
| 제이티저축은행 주식회사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4(서현동) | 박중용 |

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▪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연락처 (☎ 02-3277-928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| ①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②심사 및<br>결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③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④채무조정서<br>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⑤합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채무자)<br><br>금융회사에<br>채무조정을<br>요청합니다<br><br>(구비서류<br>제출) | ▷ | (금융회사)<br><br>채무조정<br><br>심사 후 결과<br>를 통지합니다<br>(10영업일<br>이내) | ▷ | (채무자)<br>금융회사가<br>통지한 채무조<br>정 내용에 대<br>해 동의 여부<br>를 결정합니다<br>(10영업일<br>이내) | ▷ | (금융회사)<br>채무자가 동의<br>한 채무조정<br>내용에 대해<br>조정서를 작성<br>합니다 | ▷ | (채무자)<br>조정서에 날<br>인하면 채무<br>조정 합의가<br>성립됩니다 |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▪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< 별첨1. 양도예정채권 명세 >

\* 양도예정채권 명세

(자산확정일 기준 금액)

| No. | 양수예정인        | 계약번호    | 채무자명 | 생년   | 성별 | 양도예정일      | 원금         | 기타비용 | 이자금       | 합계금        | 장래이자면제여부 | 자산확정일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| 제이티저축은행 주식회사 | 1802626 | 이*현  | 1997 | 여  | 2026-08-10 | 11,337,607 | -    | 1,874,346 | 13,211,953 | N        | 2025-09-30 |

SM신용정보